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
Feb. 2019
Vol. 22

발간년월 2019년 02월(통권 제22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**발행인** 양창호 원장
감리 황진회 본부장 **자료문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**홈페이지** www.kmi.re.kr

금주 Contents - 해사정책 이슈

IMO,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한 행동조치계획 결의서(Res.MEPC.308(73))를 채택

IMO는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(2018.10.22.~10.26.)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계획에 맞추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획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조치계획에 대한 결의서(Res.MEPC.308(73))를 채택함

■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실천계획[a)b)]

- 제30차 총회(2017.11)에서 요청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고려하여 동 위원회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IMO 행동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
- 지난 2018년 10월에 채택한 MEPC 결의서(Res.MEPC.308(73))에 따라 지속가능개발목표(G14)의 달성과 일치 되도록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조치에 대한 개발이 2025년까지 완성될 예정임
-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, 플라스틱 가방, 물병 및 어구와 같은 큰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음을 선언함
-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에 대한 검토는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와 협력하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, 해사안전위원회(MSC), 해양오염방지전문위원회(PPR), 협약이행전문위원회(III) 등이 참여하고 결과를 도출
- 어구(Fishing Gear) 유실과 같은 사고보고[1)]에 관한 사항도 행동조치계획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개발할 예정임
- 해운산업부문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감소를 위한 조치로 총톤수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강제로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도록 조치

1)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간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어구의 유실 또는 유출에 대한 조치사항의 보고, 유실된 장소 및 가능한 조치사항이 포함된 경과보고, 어구의 유실방지를 위한 통신체계망 개발, 소규모의 어업과 어선원을 고려한 기국 및 연안국에 보고하는 어선을 지원하는 제도 개발 등을 포함

-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감소를 위한 항만수용시설의 효과성과 취급, 공공인식과 교육 및 훈련의 강화
-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
- 선박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법령체계의 이해의 증진
- 선박 해양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및 기술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기금의 마련 검토 등

■ 현행 IMO 해양오염방지협약(MARPOL) 등 해양플라스틱 처리 관련협약에 따른 주요 규제내용

- IMO는 1988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배출과 관련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(MARPOL 73/78)의 부속서 V장(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한 오염방지규칙)의 발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
- 또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관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인 1972년 런던협약[2]에 따라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으로 버려지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음
- MARPOL 부속서 5장에서는 선박으로부터 투기되는 특정해역[3]을 지정하여 높은 수준의 폐기물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

■ IMO는 현재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수차례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항만국통제(PSC)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음[c]

- 선박이 입항 중에 선원에 의해 수행되는 해양오염방지 차원과 관련된 필수적인 선내 플라스틱 처리절차 시행
- 선박의 길이 12미터이상의 모든 선박에 비치되는 플래카드,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폐기물관리계획 (2011년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됨) 및 됨) 및 관리기록부 비치 의무준수 요구
- 항만의 폐기물 수용시설(port reception facilities)[4]에 관한 항만당국의 조치

2) 런던협약(LC 72) : 산업화 과정에서 선지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여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72년 2월 오슬로 덤핑협약을 모체로 하여 1972년 12월 82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됨
3) 특정해역 : 지중해, 발틱해, 흑해, 홍해, 걸프해, 북해, 남극 및 광역 캐리비안 해역
4) MARPOL에 따른 항만의 수용시설은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(기름), II(유해액체 물질), IV(선박오수) 및 V(폐기물)에서 규정하고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

IMO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

■ 국제식량기구(FAO), 유엔 해양환경전문가그룹(GESAMP) 등 a)c)

- UN 총회와 국제연합 지속개발위원회(CSD)의 요청에 따라 IMO와 FAO의 공동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환경오염 및 해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IUU(불법어업, 비보고, 비규제 어업 ; illegal,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)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함
- 해양환경전문가그룹은 해양환경에 관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100가지 이상의 종에서 수만 가지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, 부유식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
- GPML(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)은 리우+20 정상회의에서 해양 플라스틱을 감축하여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IMO가 앞장서서 항만 폐기물 처리시설운용을 위한 교육개발, LC/LP 규정에 따른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 검토, 웹사이트 개발 등에 대한 실행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청함
- ICP (The United Nations Open-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)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IMO, LC/LP 및 GESAMP의 역할을 강조하였음
- G7 및 G20에서도 IMO에 해양플라스틱 처리문제에 대한 행동계획을 주문하였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항만에 적절한 폐기물 처리장치를 구축하도록 요청함
-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의 14번(수자원보호)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IMO에 주문
- UNEA(UN 환경총회)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플라스틱에 관한 문제, 국제적 수준의 법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과 대응방안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함

■ 해양플라스틱 배출의 주요 오염원인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방지협약(MARPOL) 부속서 5장(폐기물)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시 필요성 인지 b)

- 어선의 어구에 대한 IMO 선박식별번호 부여 또는 어구에 선박표시 마킹을 하거나 사고의 보고와 플라스틱 배출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검토, IMO의 GISIS[5]를 통하여 IMO에 어선의 어구 배출과 어구사고 손실에 따른 데이터의 보고체계 구비 검토

5) 세계 통합해운정보시스템(GISIS;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)은 안전한 접근을 위해 통합된 IMO 웹 계정을 사용하는 플랫폼으로, 해운관련 정보를 수집, 처리, 공유하여 회원국과 사무국의 업무에 도움을 줌

- 특히,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항만수용시설의 효과성 증진 방안 검토
- 선원 및 낚시꾼들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고취, 교육 및 훈련 강화

■ 해양플라스틱 배출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세플라스틱의 발견[d)]

- 미세 플라스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장 폐색(intestinal obstruction), 물리적 상처, 에너지 할당 감소 및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새치, 참다랑어, 홍합과 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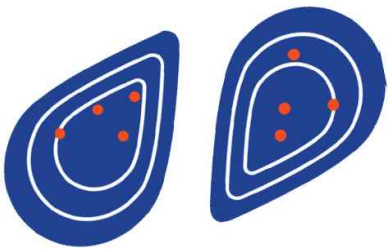

북해 양식 홍합, 대서양 양식 굴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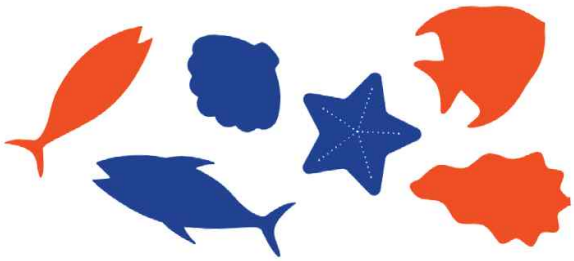

황새치, 참다랑어, 날개다랑어, 바닷가재 등 수 많은 해양동물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

정부 및 관련 산업계는 심각한 현안사항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응과 실행조치 차원의 통계자료의 확보 및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됨

■ 정부 및 관련단체는 해운산업에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확보와 과학적 근거 및 관련 정부대책 마련 긴요

- 해운산업으로부터의 해양플라스틱 발생량과 육상처리량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기국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가 요구됨

- 특히, 향후 개발될 항만국통제(PSC) 추가 지침에 대비하여 선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, 처리절차 및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함
-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IMO 등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감소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
-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선박 뿐 만아니라 바다와 근접한 육상에서도 홍수 등으로 바다로 흘러들어올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공동 행동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해양오염방지협약(MARPOL)에서 요구하는 항만의 수용시설에 대한 예산투자와 시설마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

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, 어선의 플라스틱 배출감소(어망, 낚시도구 및 물병 등)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

-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막대한 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시급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
- 특히,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어망 및 어구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작업과 낚시선박에서 배출되는 낚시도구의 손실에 따른 해양플라스틱에 대하여도 대책이 필요함
-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IMO 등 국제기구의 향후 대응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어선안전에 관한 케이프타운 협약[6]의 비준을 검토하고 한중일과 협력하여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막대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더불어 해양플라스틱의 우리나라 연안에 실태조사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와 국제협상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연구개발(R&D)에 대한 투자확대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됨

박한선 부연구위원
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(hspark@kmi.re.kr / 051-797-4627)

참고자료

a) IMO, MEPC 73/8 Development of an action plan to address marine plastic litter form ships
b) IMO, MEPC 73/WP.9,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Marine Plastic Litter
c) IMO, MEPC 73/19/add.1, 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its Seventy-Third session
d) http://www.greenpeace.org/korea/Global/korea/publications/reports/oceans/2016/20160706-Campaign-Report-Web.pdf

6) 1977년 토레몰리노스(Torremolinos) 국제어선 안전 협약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음